

의안번호	2203989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6.
추 계 번호	24F096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8 신설 (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1~10% 세액공제 신설 - 대상: 「악취방지법」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운용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 - 세액공제율(대/중건/중소, %): 1/3/10 - 적용기한: 2029년 12월 31일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8 신설 (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「악취방지법」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관리지역¹⁾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1~10%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안에 따른 경우 소득세(사업소득) 및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- 악취배출시설은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2]에 규정되어 있음
 - 축산·도축 시설, 사료·비료 제조시설, 주류·담배 제조시설, 섬유가공·가죽·신발·목재 제품 제조시설, 화학제품 등 제조시설, 산업용 세탁시설, 폐기물 처리시설 등

1)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으로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으로 각 시·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지역

-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향후 기업이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지 예측해야 하지만, 기업의 설치계획이나 평균적인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 2018~2022년 전국의 악취배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악취배출시설(사업장 수) 현황: 전국

(단위: 개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관리지역 내 신고대상	6,355	6,468	6,519	6,725	6,655
관리지역 외 신고대상	158	69	77	70	72
신고대상 외	148,426	163,167	155,388	169,213	148,620
계	154,939	169,704	161,984	176,008	155,347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기업이 향후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얼마나 비용을 지출할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